

정부 R&D 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2019.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Contents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I. 추진배경

II. 제도개선 주요내용

III. 개정 사항별 시행시점

Chapter I

정부 R&D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추진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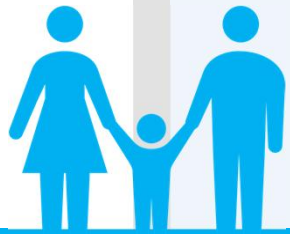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 철학인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발표가 이어짐



- ④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연구프로세스의 효율화,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등의 정책이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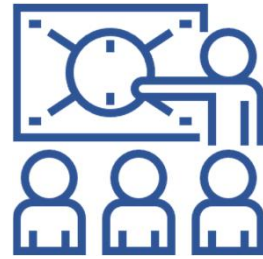
➡ 그간 발표된 정책들의 충실하고, 조속한 현장착근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주요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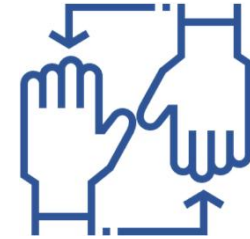
개정안 초안 마련 (9월)

- ✓ 대학, 출연(연), 전문기관 등 전문가 참여



연구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 ✓ 대학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논의 및 의견수렴(10월)
- ✓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의견수렴(9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의

- ✓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 개최 (9월7일)
- ✓ 관계부처 공식협의 및 의견조율(10월~)
- ✓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10월~)



Chapter II

정부 R&D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개선 주요내용

- 1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 2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 3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 4 기타 제도개선



1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 · 간소화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제9조제3항, 제19조제4항)

대부분의 연구과제는 **매년 협약**하고
집행한 연구비도 **매년 정산**



계속과제의 경우 **다년도 협약**을 원칙적
으로 체결하고, 집행잔액은 **이월 허용**



행정지원 인력 확충(별표2)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 없고, **기관 지원에만 의존**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의 경우에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원 허용**



종이영수증 제출 전면 폐지(제12조의2제9항)

영수증을 건건이 제출해야 함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 몰입 시간 낭비**



연구비 집행 증빙 서류(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

※ 자체 전산시스템이 없는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전자 보관 지원

1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 · 간소화



연구비 집행 자율 강화(규칙)

연구과제 착수단계에서 연구비 예측이 어렵고,
연구비 변경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연구비 사용용도* 별 총액만 기재하고
연구자가 자율 집행(연구활동비)

* 1. 출장비, 2. 특허경비, 3. 연구실 운영비 등 9개 항목



연구비 비목 간소화(별표2)

현재 연구비 비목 체계가
복잡하여 연구자들의 불편함을 야기



비슷한 성격임에도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로 이원화 되어있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연구비 정산 간소화(별표2)

대학의 연구실운영경비를 연구비에서
계상하기 곤란하여 편법적 사용이 빈번



연구실 운영비를 신설하고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정산
서류 제출 면제

※ 직접비의 5% 이내에서 계상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사항은 올 9월 1일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자동 구현



박사 후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제8조제3항)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 후 연구원도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는 사례 빈번



박사 후 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보장(제9조제7항)

학생연구원은 같은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기술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을
과제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학생인건비 풀링제 충실한 시행(제12조의3)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 하고 있으나,
제대로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은
학생인건비를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명시



범부처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25조제29항)

기관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비효율** 초래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지원시스템(PMS)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제6조제4항 등)

연구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체계가 부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에 한함



연구시설·장비비 풀링제 도입(제12조의4, 별표2)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연구
과제별로 각각 사용하며,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과제가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함

※ '연구장비 통합관리 지침' 제정 중 (9월 1일 까지)



중복 예외기준 명확화(제7조제11항)

중복 예외기준이 연구과제의 효율적 관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되어 있음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연구수행 방식 등이 다른 경우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인정



3책5공 기준 완화(제32조제2항)

3책 5공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원칙보다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



3책 5공 예외 대상이 되는 과제의 기준을 완화

※ 현행 : 과제 신청 마감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개선 : 과제 신청 마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선정평가 기준 완화(별표1)

선정평가위원을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동일 학교·기관* 에 소속되어 있어도 학과·부서가 다르면 선정평가 위원으로 배제하지 않음 * 대학, 출연(연), 특정(연)



평가결과 공개 확대(제7조제7항, 제16조제7항)

평가결과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선정평가
뿐만 아니라,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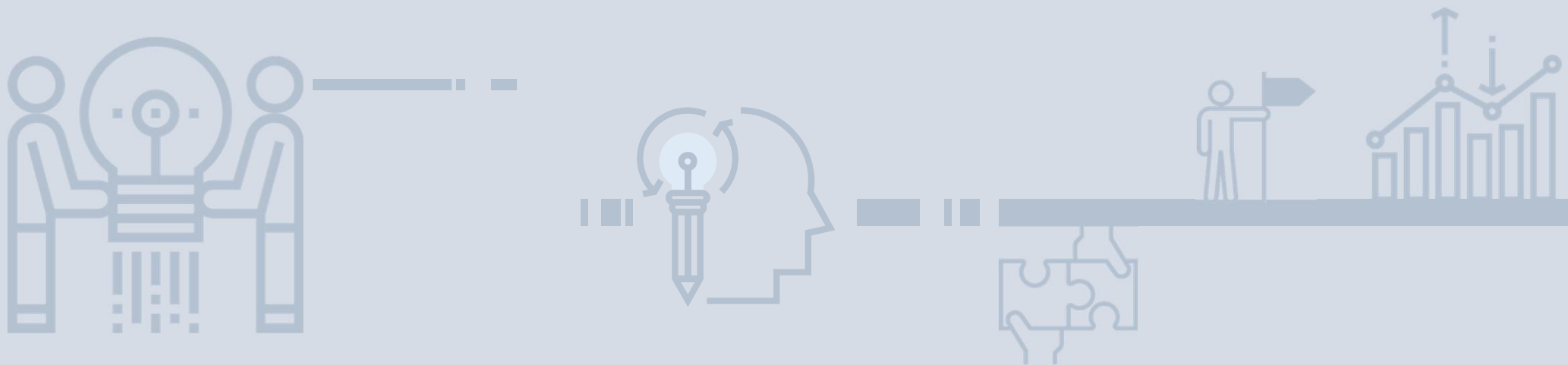


기술창업 지원기간 연장 허용(별표2)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기간은 설립
이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연구간접비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기간(종전 5년)의 연장을 허용



Chapter III

정부 R&D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개정 사항 시행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 개정 사항별 시행시점



제 · 개정내용	제 · 개정조문	적용례/경과조치
중간, 최종, 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	제7조제7항, 제16조제7항	공포 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증명 서류 첨부	제8조제3항	
3책 5공 허용기간 연장	제32조제2항	
계속과제 다년도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	제9조제3항, 제19조제4항	'19년 9월 1일부터 적용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 포함	제9조제7항	
연구장비 유지, 보수비 통합관리 도입	제12조의4, 별표2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운영 근거 마련	제25조제29항	
연구행정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허용	별표2	'19년 9월 1일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연구비 비목 간소화(연구과제추진 비 삭제)		
회의비, 연구실운영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면제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 지원 기간 확대		
영수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제12조의2제9항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제12조의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6조제4항	'19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연구목표, 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연구과제 중복을 인정		